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여권신청 구비서류

- 일반인의 경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현 소지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지참)
- 미성년자(18세미만)인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
 -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 현 소지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지참)
- 병역대상자(18세이상37세이하 남자)인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37세이하)
 - 기타 병역 관련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현 소지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지참)

여권 사진안내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3.5cm(가로)×4.5cm(세로) 크기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3.2cm~3.6cm이어야 합니다.

- 사진 바탕은 흰색이어야 하며,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의상은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고,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나타나야 하며,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선글라스와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금	합계	대상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4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만18세 이상
			24면	35,000원		50,000원	
		5년	4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만8세 이상 ~ 만18세 미만
			24면	30,000원		42,000원	
	5년 미만	48면	33,000원	-	33,000원	만8세 미만	
		24면	30,000원		30,000원		
		5년 미만	15,000원	-	15,000원	병역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1회 여행만 가능
기타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	25,000원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기재사항 변경		5,000원	-	5,000원	사증 추가	
	여권사실 증명		1,000원	-	1,000원		

-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 모금하며, 여권발급수수료와 함께 징수됩니다.
-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바로보기](#)

여권발급 신청 안내 및 기타 여권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061)470-2429로 문의바랍니다.